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봉인 발급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등”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등록번호판의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착·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하고 봉인하는”을 “부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이”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출납·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등록번호판의 제작·출납·발급현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 및 봉인”을 각각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

인을 한”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으로,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를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고자”로,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으려”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부착·봉인하여”를 “부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봉인”을 각각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착하고 봉인하는”을 “부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종 및 용도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및 성능상 본문의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를 표시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발급 및 봉인(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을 “발급(이륜자동차번호가 변경되는”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3(이륜자동차번호의 변경 신청 등)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에서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번호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101조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 1) 및 같은 호 나목 1)의 검사기준란과 검사방법란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 제1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되었거나 사용신고한 적이 있는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 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 봉인등</u> <u>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 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 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 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 다.</u> <u>② 삭제</u> <u>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 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u>부착 및 봉인</u>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u>	<u>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등</u> <u><삭 제></u> <u>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① --- ----- ----- <u>부착</u>----- ----- ----- ----- ----- ----- ----- ----- ----- ----- -----</u>

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

록번호판을 부착하려

②

부착

등록번호판

③ (현행과 같음)

④_____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삭 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
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
다)

4.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
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하
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생 략)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 부착-----

-----.

3. ----- 등록번호
판-----

--

4. (현행과 같음)

⑤-----
----- 부착하는 -----
-----.

⑥-----

-----.

1. (현행과 같음)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출납·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2. (생략)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생략)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

⑦----- 등록번호판의 제작·출납·발급현황-----

-----.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부
착-----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
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
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
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
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
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
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
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
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
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

----- 부착-----
-----.

④ (현행과 같음)

⑤ ----- 등
록번호판을 부착한 -----

----- 등록번호
판-----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을 발급받고자 ----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 같다)-----
-----.

②----- 등록
번호판을 발급받-----

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
-----.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동일성 확인

가. (생략)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생략)

2. ~ 22. (생략)

③ ~ ⑥ (생략)

제81조(재검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

1.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2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재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80
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
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
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④ ~ ⑥ (생략)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
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
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
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
하는 시 · 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
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
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
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 · 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1. -----
----- 등록번호판-----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
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
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종 및 용도 기호를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후
면 구조 및 성능상 본문의 이륜
자동차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
우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제10
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
은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 · 도를
표시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

②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착할 수 있다.

②-----

----- 붙여야 -----
-----.

-----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이륜자
동차번호판-----

----- 부착하여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 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 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1. 2. (생략)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

④ -----

----- 부착 -----
-----.

⑤ -----

----- 부착 -----
-----.

1.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부착하는 -----
-----.

⑧ -----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
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100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
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

이륜자동차번호판-----

-----.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
차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호판의 발급 및 봉인(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 제

⑤ (생 략)

<신 설>

----- 발급(이륜자동차번호가 변경되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3(이륜자동차번호의 변경 신청 등)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에서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제101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번호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101조제3항을 준용한다.